

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위원장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,

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
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의 법령상 근거가
미비한 상황으로,

서울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

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
확보를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(안 제 8조)하고
민간전문가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

및 구성·운영 등을 규정(제9조)하는 것입니다.

둘째,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을 규정(제15조)하는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청렴문화조성에 관련된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·규율하기 위해 기존의 근거조례(「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)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을 규정(제24조)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